##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95

발의연월일: 2024. 9. 19.

발 의 자:민형배·조계원·김용민

문정복 • 복기왕 • 김현정

이재강 · 김동아 · 김준혁

장경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임. 이러한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기관임.

이러한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헌법 및「국회법」은 의사 절차를 주관하는 국회의장,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은 국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뜻을 실현해야 한다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은 지위에 있음.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이와 같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회의 의사 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

이에 국회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과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민주적 기능을 강화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20조의4 및 제41조의2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3(의장의 불신임 의결) ①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불신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부의장의 해임 의결) ① 부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대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해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제20조의3(의장의 불신임 의결) |
|                    | ①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   |
|                    |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    |
|                    | 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  |
|                    | <u> 어야 한다.</u>     |
|                    | ② 제1항의 불신임안이 발의되   |
|                    | 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
|                    |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    |
|                    | 으로 보고 지체 없이 불신임    |
|                    |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 <u>&lt;신 설&gt;</u> | 제20조의4(부의장의 해임 의결) |
|                    | ① 부의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
|                    | 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    |
|                    | 나 직무태만 또는 부당한 권한   |
|                    |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
|                    | 의결할 수 있다.          |
|                    | 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   |
|                    | 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
|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
|                    | 이 있어야 한다.          |
|                    | 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   |
|                    | 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
|                    |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    |

<신 <u>설></u>

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 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해임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거나 직무대만 또는 부당한 권한 권한 행사를 한 경우 국회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의결은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발의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지체 없이 해임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임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